

의안번호	2220967
의 퇴 인	김재섭의원
회 답 일	2026. 9. 15.
추계번호	26C44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의3 신설 및 안 제72조	시·도지사는 문화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0조의3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예비관광특구를 포함하여</u>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2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0조의3 신설 및 안 제72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추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0조의3 신설), 예비특구 지정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2조)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정 지역이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예비관광 특구가 될 지역과 지원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법 제72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법 제72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지원 관광특구 수	지원 금액
2023년	9	853
2024년	5	549
2025년	6	5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